

제4회 외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위원장

학교장

## 본 회의 회의록

○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요일) 15시

○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교육상담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학교 사업 신청 심의(안)
2. 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
3.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안)
4. 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안)
5. 2023학년도 공작물(탄성포장재) 철거 및 처분 보고(안)
6. 기타안건

간 사 : 지금부터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교장선생님 (윤○○)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 모두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중략) 학교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 학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의선언과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김○○)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학교장으로부터 “2024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학교 사업 신청 심의(안)”외 4건에 (윤○○) 대한 안건을 2023년 11월 7일 제출함에 따라 11월 7일 운영위원회 개최공고를 하여 오늘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학교 사업 신청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양○○)	2024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학교사업 신청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외11(통학지원)1항, 나. 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 다.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경기학생통학지원 기본계획에 의거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학교 주변 및 여러 통학 환경이 열악하여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붙임 자료를 보시면 버스는 중형 1대를 신청하며, 예산기초금액은 62,600,000원입니다. 예산 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7:3으로 지원해 주시며,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학교자체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학교 사업 신청 심의(안)에 대하여 신청여부를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6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0명) (기권 0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학교 사업 신청 심의(안)은 통학버스 지원 사업 신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양○○)	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일반수입 및 교특전입금입니다. 초등학교 학교회계기본운영비 및 유치원 학교회계기본운영비로 공공요금에 4%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매각대금, 학교회계이자수입, 폐식용유 매각대금은 현재기준으로 증액된 금액만큼 세입 및 세출을 일치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은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돌봄교실 급간식비의 세입금액은 9,000,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방학중 운영분까지 계상하여 2,770,000원을 감액하여 세입 및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목적사업비 성립전 예산은 특수교육대상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무원 활동비 추가분 2,250,000원 외 9건으로 총172,343,000원을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기본운영비 및 목적사업비의 기편성된 예산의 변경 내용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변동이 생긴 사업에 대하여 예산 금액을 조정하거나, 사업이 종료된 집행 잔액은 더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도록 다음과 같이 추경하였습니다. 교과활동지원 공동교육과정운영비에서 1,300,000원 외 40건에서 총42,968,000원을 감액하여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물소규모수선비 26,690,000원외 18건에 계속 진행중인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나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물소규모수선비에서 2,500,000원을 감액하여, 비품구입비에 2,500,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6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0명)  
(기권 0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사 (이○○)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보겠습니다. 고시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교원이 재량을 발휘하여 생활지도를 하였으나 아동학대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법을 정해두려고 합니다.  
둘째 본교에서는 매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규정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어린이회, 무단결석, 특기적성, 계발활동과 같은 오래된 용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체계가 뒤얽혀있고 조항호목과 같은 조문 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개정하려고 합니다.  
셋째 포천교육지원청에서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차별금지 규정, 표현의 자유 규정,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규정 개정은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학교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재 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6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0명)  
(기권 0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사 (김○○)	<p>외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p> <p>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개정 규칙 개정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p> <p>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p> <p>제5장에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제11조 특수 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제12조 특수 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제13조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위원장	질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김○○)	<p>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p> <p>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6명)</p> <p>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0명)</p> <p>(기권 0명)</p> <p>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위원장 (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작물(탄성포장재) 철거 및 처분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양○○)	<p>2023학년도 공작물(탄성포장재 등) 철거 및 처분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p> <p>근거 “가”의 공유재산법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처분에는 건물, 공작물의 철거 및 멸실, 교환, 양여등이 있으며, 건물의 용도 폐지시 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하나, 현재 우리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었던 탄성포장재는 물품으로 처분 가능하여, 근거 “나”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에 의거 대상 가격 3억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 자체에서 물품으로 상호 전환하여 물품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p> <p>공작물 처분에 대한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위원장	질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김○○)	<p>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작물(탄성포장재) 철거 및 처분 보고(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p> <p>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6명)</p> <p>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0명)</p> <p>(기권 0명)</p> <p>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공작물(탄성포장재) 철거 및 처분 보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위원장 (김○○)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6명)	김○○, 하○○, 진○○, 전○○, 정○○, 이○○
기록자	간사 윤 ○ ○ (인)